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37
----------	------

2020년 9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8월 12일 박기재 의원 외 11명
2.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박기재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01호, 2020. 4. 7. 일부개정)]과 그 밖의 인용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과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옮겨 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과 인용법률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2호 및 제3조제1항제5호)
- 나. ‘지표개발’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로 수정하여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라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다. ‘서울특별시장’의 약칭(시장)을 옮겨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라. 제8조제5항 후단의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안 제8조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과 그 밖의 인용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인용 조문, 제명 띄어쓰기 정비,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옮기는 등 관련 내용의 정비·보완을 통해 법률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서는 중앙정부, 복지부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음.
-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에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동법 제41조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명시해 민관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표〉 사회복지전달체계상 민-관 협치구조¹⁾

1) 함철호(2019), [특별세션 1.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 복지협치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45-157

전달체계	민-관 협치구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20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급여법 40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41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법 41조 5항)

- 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부터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보장 급여 제공 등을 소관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7. 3. 21.>

1.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1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보장기관의 장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 서울시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1993년부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표>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개발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 서울특별시 관할 자치구의 사회보장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지자체가 복지사업 수행의 책임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의 추진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사회보장급여법」을 통해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운영체계를 통하여 연차별 보고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의 현황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 지표는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역적 진단과 평가는 물론,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으로서 기능하게 되며, 나아가 지역사회 보장 지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지향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됨.²⁾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법적인 정비를 통해 조례해석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추진목적

- 서울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기능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심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서울시민복지기준 평가시민발표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수/임기 : 총31명(위촉직 29, 당연직 2)/'18.10.26. ~ '20.10.25.(위촉일로부터 2년간)
 - 회의운영 : 정기회 연 2회 이상,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사업예산('20) : 20,650천원(시비 100%)

 추진실적

-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 2회(서면심의 4월, 7월)
 - '20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및 복지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 '19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결과 심의 등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등 개최 : 2회(3월, 6월)

'20년 주요 개선사항

◆ 제14대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운영 확대

- 제13대 사회복지위원회 임기만료('18.10.26~'20.10.25)로 제14대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운영 확대 : 3개 위원회('19년) ⇒ 4개 위원회('20년)
 - ※ 기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서울시민복지기준 2.0(신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7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 : 박기재, 안광석, 김춘례, 이영실,
전석기, 김달호, 오한아, 김태호,
정지권, 김경영, 김광수, 김호진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01호, 2020. 4. 7. 일부개정)과 그 밖의 인용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과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의 위치를 옮겨 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과 인용법률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제5호)
- 나. ‘지표개발’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로 수정하여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라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다. ‘서울특별시장’의 약칭(시장)을 옮겨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라. 제8조제5항 후단의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표개발”을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중 “업무수행 상”을 “업무수행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제40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u>지표개발</u>,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p> <p>3. ~ 7. (생략)</p> <p>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 ① 위원</p>	<p>제1조(목적) -----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제40조제6항 ----- ----- -----.</p> <p>제2조(기능) ----- ----- ----- ----- ----- -----.</p> <p>1. ----- ----- ----- <u>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u>----- -----</p> <p>2.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 -----</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 ① -----</p>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그밖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같음)

⑤ -----
-----.

<후단 삭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 업
무수행상 -----

-----.